

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한일용 의원)

의안 번호	21-137
----------	--------

발의년월일: 2021. 11. .

발 의 자: 한일용, 강명숙, 권영숙,
김기석, 김영미, 김종선,
김진천, 이민석, 장덕준,
정혜경, 채우진, 최은하

1. 개정이유

주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내 취약계층에 방범시설물을 설치·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포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침입범죄’, ‘방범시설’ 용어 정의 추가 신설(안 제2조)
- 나. 기본계획의 수립 시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분석 정보 활용 의무화(안 제5조)
- 다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추가 신설(안 제8조)
- 라.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항 신설(안 제8조의2)
- 마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신설(안 제9조)

3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

4. 입법예고 : 2021. 11. 19. ~ 2021. 11. 24.

5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

6. 조례안 : 붙임 참조

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”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침입범죄”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.
3. “방범시설”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, 방범창, 방범용 망창, 방범용 창살, 창호용 잠금장치,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활용할 수 있다”를 “활용해야 한다”로 한다.

제8조제3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호(중전의 제3호)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범죄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

4.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
5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2(방범시설 설치 지원)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,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, 지원기준, 정산 등은 제9조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.

제9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8조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
5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“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”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,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”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. 2. “침입범죄”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. 3. “방범시설”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, 방범창, 방범용 망창, 방범용 창살, 창호용 잠금장치,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.
<p>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생략) 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. 	<p>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등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활용해야 한다.
<p>제8조(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) 구청장은 범죄로부터</p>	<p>제8조(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) -----</p>

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3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<신설>

<신설>

제9조(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범죄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

4. 방법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 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

5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

6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2(방법시설 설치 지원)

① 구청장은 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,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법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, 지원기준, 정산 등은 제9조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.

제9조(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

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4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위원회 설치·운영) ①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제8조2에 따른 방법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

5.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
6. (현행 제4호와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8조2 방법시설 설치지원(신설)

제8조2(방법시설 설치 지원)

- ① 구청장은 저소득층, 노약자, 장애인,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법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, 지원기준, 정산 등은 제9조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도시환경국 건축과 황철현
연 락 처	02-1353-9443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
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
가. ~ 카. (생략)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~ 차. (생략)

3. 농림·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

가. ~ 하. (생략)

4.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·관리에 관한 사무

가. ~ 라. (생략)

마.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

바. ~ 거. (생략)

5. ~ 6. (생략)